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KF-96-SPRAY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오일, 변성오일 이형제

사용상의 제한 산업용으로만 사용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제조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7-23 GT타워 15층
담당부서 업무부
전화번호 + 82(0)2-590-2500
FAX번호 + 82(0)2-590-2501

공급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7-23 GT타워 15층
담당부서 업무부
전화번호 + 82(0)2-590-2500
FAX번호 + 82(0)2-590-2501
응급상황 + 82(0)2-590-2500
이메일 msds@shinetsu.net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1
건강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이곳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성은 "분류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또는 "분류가 가능하지 않음"임.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위험

o 유해·위험 문구 H222 극인화성 에어로졸.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할 것 - 금연.
P211 화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분사하지 마시오.
P251 압력용기 : 사용 후에도 구멍을 뚫거나 태우지 마시오.

저장

P410 + P412 직사광선을 피하고 40°C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자료없음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액화석유가스		68476-85-7	KE-28191	90 - 95

위생대책 사용할 때에는 흡연하지 말 것. 휴식 시간 전이나 본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우수한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형태 액체.
 색 무색. 투명한.

나. 냄새 무취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녹는점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40 °C (< -40 °F) [액화석유가스(LPG)]

사. 인화점 < -20 °C (< -4 °F) 밀폐식 시험 방법
 > 250 °C (> 482 °F) 개방식 [유효성분]

아. 증발 속도 > 1 (부틸 아세테이트=1)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1.6 % v/v [액화석유가스(LPG)]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11.1 % v/v [액화석유가스(LPG)]

카. 증기압 > 130 kPa (20 °C) [액화석유가스(LPG)]

타. 용해도 불용성

파. 증기밀도 > 1 (공기=1.0) [액화석유가스(LPG)]

하. 비중 0.56 (25 °C)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해당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 250 °C (> 482 °F)

더. 분해 온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화학적 안정성 정상 상태에서는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위험한 중합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가열 또는 연소에 의해 분해생성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따라 미량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함: 이산화규소 포름알데히드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해당없음.

○ 경구 자료없음.

○ 눈 자료없음.

○ 피부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알려지지 않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 발암성 IARC-Gruop 1, 2A, 2B 등재되지 않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없음.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노출기준설정물질

L.P.G (LIQUIFIED PETROLEUM GAS) (CAS 68476-85-7)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찰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규제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액화석유가스 (CAS 68476-85-7)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한국

목록명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ECL)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재고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추가 정보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1997-10

개정) 대한민국. 관찰 대상 화학물질 (TCCL 장관 명령 제 6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나. 최초 작성일자

2013년 4월 22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해당없음.

라. 기타

자료없음

책임의 한계

기재내용은 대표치이고, 규격 및 보증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추천된 산업안전보건조치나 취급방법은 통상의 취급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용도, 취급조건은 추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일반공업용도로 개발, 제조된 제품입니다. 의료용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귀사에서 사전TEST하여, 해당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하십시오. 의료용IMPLANT용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